

19世紀 美國의 經濟環境 變化에 따른 會計思考 및 概念의 發達

李 正 浩

『目 次』

I. 序 言	V. 租稅制度와 會計의 發달
II. 19세기의 美國經濟 概觀	1. 세법의 전개과정
III. 產業革命이 會計에 미친 영향	2. 세법과 회계
1. 技術의 变革과 會計思考 및 會 計技術의 發달	VI. 株式會社의 發달과 會計
2. 原價計算의 生성과 發전	1. 주식회사의 發달
3. 減價償却會計의 전개	2. 주식회사제도의 發전이 會計思考 에 미친 영향
IV. 鐵道產業의 성장과 會計의 發달	VII. 證券市場의 發전과 會計
1. 철도산업의 發달	VIII. 結 言
2. 철도산업이 회계에 미친 영향	

I. 序 言

미국에 있어서 회계가 산업을 배경으로 급격한 발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19세기에 나타난 일련의 경제적 사건은 複式簿記시스템으로부터 會計學으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영국에 있어서 商工業의 급속한 성장은 회계의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켰다. 상공업의 발전은 經濟制度·會計目的·會計資料의 이 용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19세기초까지만 하더라도 簿記는 管理目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진행된 產業革命의 결과 경제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주주·투자자·채권자·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壓力團體로서 작용하게 되었고 이들의 요구에 따라 財務上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 本稿는 1995年度 서울大學校經營大學 研究費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임

산업혁명은 1800년까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18세기에 발명된 각종의 기계는 19세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예컨대, 카트赖特(Cartwright)의 동력직기는 1787년에 특허를 받았는 데도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19세기에 나타난 經濟的 變革은 會計思考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산업혁명의 결과 기계에 의한 大工業이 발전하였으며 이것은 原價計算의 발전과 減價償却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철도산업의 발전은 資本과 利益의 구분문제와 아울러 감가상각에 관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00년에서 1930년에 이르는 약 130년간에 회계사고에는 큰 변화가 있었으나 會計理論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별다른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930년부터 회계이론의 발전에 큰 전기를 이루는 사건이 나타났다. 그것은 1930년에 뉴욕證券去來所와 美國會計士協會(당시 AIA로서 현재의 AICPA의 前身)간에 會計原則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권위있는 회계단체에서 회계원칙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회계원칙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회계사고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에 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Ⅱ. 19세기의 美國經濟 概觀

18세기 후반에 와서 아메리카 식민지가 경험한 두 차례의 전쟁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 하나는 프랑스·인디안 동맹군과 영국·아메리카 식민지와의 싸움이었던 프랑스·인디안전쟁⁽¹⁾(French and Indian War, 1756~63)으로서 이는 미대륙에서 商業上의 主導權을 둘러싸고 나타난 투쟁이었다. 이 전쟁의 결과 영국은 미시시피(Mississippi)강에서 앨리게니(Allegheny) 산맥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프랑스로부터 이양받고 北美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한편, 식민지 산업의 통제와 무역독점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조

(1) 프랑스·인디안전쟁(French and Indian Wars)은 1689년부터 1763년에 걸쳐 北美的 광범한 殖民地 領土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영국의 사이에 나타난 일련의 전쟁이다. 마지막인 동시에 결정적으로 영국에 승리를 가져다 준 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에 걸쳐 있었던 7년전쟁(the Seven Years' War)이다.

치료 식민지 상인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상충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하나는 獨立戰爭(1775~83)으로서 이것은 프랑스·인디안전쟁 이후에 강화된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重商主義的 政策에 의한 정치적·경제적 질곡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식민지 상인이 중심이 되고 대부분의 주민이 참여한 투쟁이었다. 이 전쟁의 결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중상주의적 식민지 정책의 굴레를 벗고 국민적 기반 위에서 聯邦政府에 의한 국민경제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독립전쟁의 결과 미국은 1783년에 독립되고, 1789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선출되는 한편 초대 재무장관으로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임명되었다. 해밀턴은 당시 미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로서 美合衆國銀行의 설립, 公債整理, 近代的 租稅制度의 확립, 貨幣金融制度의 정비 및 保護關稅制度의 채택 등 일련의 경제정책을 펼쳐 미국의 產業資本을 蕪積하도록 한 시조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다. 특히, 그는 농업으로부터 출발한 미국에 금융자본가들의 활동무대인 월스트리트(Wall Street)를 탄생시켜 동북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독립전쟁 당시에 발행한 舊債를 證券業者에게 買占시키고 구채를 新債로 교환하는 데 따르는 이자지급을 연방정부가 보증함으로써 농민에 의해서 창출된 막대한 부를 증권업자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편으로는 職人에 대해서 無利子로 공공의 자금을 대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中央銀行을 설립하여 資本主義的 生產發展을 위한 金融信用上의 조건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는 정부의 出資增加를 가속·공장부지·노예에 대한 直接稅로 보충함으로써 상공업자보다는 남부의 奴隸制度下의 大農場主와 서부의 獨立農民에게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일련의 경제정책은 농민의 반발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쳤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이같은 상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농업의 중심은 西進運動(westward movement)과 더불어 서부로 이동하게 되었고 공업은 가내공업에 기반을 둔 단순협업시대를 극복하고 工場制手工業時代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바꿔 말하면 產業革命期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산업혁명은 대체로 1790년대에서 186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수행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870년대 이후의 미국은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1783년부터 1801년까지의 20년도 채 못되는 기간에 英國 및 歐洲大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훨씬 낙후되었던 미국에 350개에 달하는 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금융기관으로 북아메리카은행(Bank of North America), 뉴욕은행(Bank of New York)과 보스톤에 매사

추세츠은행(Bank of Massachusetts)이 창설되었고 1792년에는 오늘날의 뉴욕證券去來所 전신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787년에는 최초의 棉花工場이 매사추세츠에 건설되었으며 2년 후에는 미국에 있어서 산업혁명의 시조로 불리우는 새뮤얼 슬레이터(Samuel Slater)가 영국으로부터 紡績機械의 設計를 가지고 이주하였고 1790년에는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의 포우터 켓트(Pawtucket)에 아크라이트式 방적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때부터 미국은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의 제1보를 내딛게 되었다.

18세기 말로부터 19세기 초에 걸친 산업혁명기에 미국에 있어서의 複式簿記도 완전한 형태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1796년에는 미첼(William Mitchell)이 저술한 최초의 부기서 *A New and Complete System of Bookkeeping by an Improved Method of Double Entry*가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출판되었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종류의 부기책이 발간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도매상들은 복식부기를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에 있어서 產業資本의 蕁積過程은 제2차 독립전쟁이라고도 불리우는 對英戰爭(1812~15)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쟁 중에 영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이 끊어지면서 국내에서 축적된 상업자본은 제조공업에의 투자로 전환되어 1815년경부터는 小規模工場生產의 발전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은 유럽으로부터 도입된 외국자본과 제휴하여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때까지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工場會計의 前身으로서의 原價計算技術이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

1814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월顿(Waltham)에 설립된 보스톤 제조회사(Boston Manufacturing Company)와 뉴잉글랜드에 설립된 금속공업이나 방적업 등의 중소공장은 이미 19세기 중반기까지는 불완전하나마 원가계산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었다. 왜곡된 방법으로나마 間接費의 計算과 標準原價의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原價計算과 一般會計가 유기적인 결합을 맺게 되고, 또 간접비 배부와 표준원가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이다.

1830년 이후 鐵道狂의 時代(railroad mania era)에 돌입하면서 철도산업의 발전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공업·농업의 발달이 철도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연번에는 신흥도시가 나타나 인구의 集中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860년에 인구 8,000명 이상의 도시가 141개에 불과하던 것이 그로부터 20년 뒤인

1880년에는 286개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百貨店이나 通信販賣店과 같은 근대적 유통기관이 나타났다. 철도산업은 南北戰爭(Civil War, 1861~65)을 계기로 하여 한층 발전을 보게 되었다. 종래에는 배당을 하지 못하던 철도회사가 배당을 하는가하면 대다수의 회사는 真實한 利益을 은폐하기 위하여 株式配當(stock dividends)을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철도증권은 투자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서 활황을 맞게 되었다.

또한 남북전쟁은 산업혁명을 한층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1860년 이후의 10년 동안에 工企業者는 80%의 증가를 보였다. 제조업의 중심지가 된 필라델피아에서는 1862년에 58개의 공장이 신설되었으며, 1863년에는 57개, 1864년에는 65개의 공장이 신설되었다. 大企業財團이 형성되어 軍需品의 生產工場이 번창하고 戰後에 그 자본은 정부에서 증여한 광대한 토지와 더불어 철도나 대공장제 공업에 투자되었다.

1880년대는 산업혁명도 일단 종결단계에 들어가 미국은 농업국으로부터 工業國으로 그리고 상업자본주의로부터 近代的 產業資本主義로 전환을 이루한 時期이다.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동력자원으로서 石油·電氣가 등장하고 電信·電話·라디오·自動車 등의 근대적 설비를 가지고 미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중요한 산업계의 변화를 보면, 우선 농업은 粗放農業으로부터 集約農業으로 전환하여 기계화되었으며 공업은 農產物原料工業으로부터 鐵產物原料工業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성품을 수입하고 반제품을 수출해 오던 경영체제가 이제는 반대로 완성품을 수출하고 반제품을 수입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企業合併 및 合同이 시작되어 종래 대기업이라고 하면 철도나 가스 등 공의사업에 국한되었던 것이 一般產業會社도 거대한 기업에 포함되었고 독점자본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처음에는 공의사업에서만 활약을 해오던 專門經營者가 일반산업분야에도 진출하여 經營의近代化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美國會計制度의近代化 및 英國會計制度의 이식에 의한 회계직업의 발전도 이 같은 움직임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9세기초부터 20세기초에 걸쳐 미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하였다. 회계사고의 발전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나타났고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기초적인 회계개념이 경제발전의 추이에 따라 서서히 생성하게 된 것이다.

경제발전이 회계사고와 개념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헨드릭센(Eldon S. Hendriksen)은 ① 技術變化, ② 鐵道產業, ③ 政府規制, ④ 所得稅, ⑤ 株式會社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구분은 문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편의

상의 구분이며 실제적으로는 제반 사건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나 會計思考 및 概念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II. 產業革命이 會計에 미친 영향

1. 技術의 变革과 會計思考 및 會計技術의 발달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19세기초부터 複式簿記制度 나아가 회계의 발전에 자극을 준 일련의 경제적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회계는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회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產業革命에 의한 技術의 变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1800년 이전 아메리카 식민지의 공업은 농민들의 자국수요를 위한 전형적인 家內工業 (household industry)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중기계에 의한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자본은 고작 원재료·재공품·완제품 등 在庫資產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었으며 기계·설비 등 固定資產에의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산업혁명의 순조로운 진행에 따라 기술혁신과 발명품이 실용화되면서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2) 美國에 있어서 會計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社會經濟的 問題에 대한 體系的 分析은 다음의 著書 및 論文에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3rd edition,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 1977).

Maurice E. Ploube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ccounting" in *Modern Accounting Theory*, edited by Morton Backe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6), pp.5-27.

A.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American Institute Publishing Co., Inc., 1933).

A.C. Littleton and B. S. Yamey (ed.), *Studies in the History of Accounting* (Richard D. Irwin Inc., 1956)에 收錄된 여러 論文.

M. Chatfield,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 revised edition, 1977), 李正浩譯『會計思相史』, 經文社, 1985년.

R. F. Salmonson, *Basic Financial Accounting Theory* (Belmont Calif.: Wadsworth Publishing Co., Inc., 1969).

Robert L. Heilbroner,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America* (Harcourt Brace Joranorich,

는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산업혁명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의 하나는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동력원의 개발이었다. 1776년 이전에는 水力이 가장 중요한 동력의 원천이었으며, 이것은 1850년 대에 蒸氣機關이 발명될 때까지 가장 일반적인 동력원이었다. 191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국에 산재하고 있던 공장은 석탄과 수력에 의한 동력으로부터 內燃機關이나 電氣에 의한 동력으로 대체되었다.

19세기 중엽까지 공장제도는 영국과 미국에 널리 보급되었으나, 산업기계는 수작업을 위한 보잘 것 없는 기계들이었다. 공장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과거에는 商業的 財務活動에만 적용되던 회계기술이 공업활동에도 확대하여 적용되었다. 1850~1914년에는 기계화된 중장비에 의한 상품생산이 놀랄 만큼 성장하였다. 예로서, 미국의 연간 철강생산량은 1867년의 약 20,000톤에서 1914년에는 약 24,000,000톤으로 증가되었으며, 또 1929년에 이르러서는 약 56,000,000톤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하였다. 생산의 기계화와 대량생산방법에 의한 제품생산의 급속한 확대는 固定資產에 한층 많은 투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에서 나타난 공업기술의 경이적인 발전은 회계사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회계영역은 原價會計와 減價償却概念의 발전으로 집약하여 볼 수 있다. 19세기 이전까지 감가상각은 중요한 회계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고정자산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工場制度와 大量生產方式의 출현으로 고정자산이 생산과 분배면에서 중요시되고 生產原價와 在庫資產의 관리를 위한 정보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술변혁이 회계학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으로서는 資本과 利益의 구분, 繼續企業概念의 발전, 자산평가기준으로서의 原價主義의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기업이 투자자와 경영자의 분리를 전제로 한 不在所有主를 위한 회계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企業利益과 기업소유주를 위한 資本의 還給과를 구별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2. 原價計算의 생성과 발전

공업의 전반적 성장으로 말미암아 19세기말에 와서는,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 原價計算이 발전하게 되었다. 원가계산의 기원과 발전에 관해서 리틀頓(A.C. Littleton)은 다음

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複式簿記에 의한 상업부기는 수 세기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원가계산은 그보다 오래된 것은 아니다. 사실 그의 기원은 최근의 일로서 본질적으로는 19세기의 산물로서 20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확대되어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원가계산은 산업혁명의 수많은 결과 중의 하나이다.”⁽³⁾

산업혁명에 의한 원가계산의 발전과정을 더듬어 볼 때 家內工業으로부터 工場制生產으로 이행하게 된 18세기말에서부터 19세기초에는 원가계산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할 수 있는 계기없이 서서히 발전하였다. 원가계산의 이론 및 실무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30년인 1870년 이후의 일이다. 엘드릭센(Eldon S. Hendriksen)은 원가계산의 발전이 이와 같이 늦어진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

① 공장제생산의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高價의 機械設備는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회계에서 차지하는 間接費의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重工業 및 大量生產方式이 점차로 확대되고 거대한 동력기계를 이용하게 되면서 제조원가 중에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이 원가계산에 관한 이론의 발전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② 많은 원가계산 전문가들은 자기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가계산방법을 비밀에 부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원가계산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을 저해하였으며 이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원가계산에 관한 교과서에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원가계산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었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원가계산상의 문제는 각 기업, 각 업종에 따라 특이하게 나타나므로 원가계산방법을 인쇄물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 그것은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들(즉, 경쟁자)을 이롭게 할 뿐 기업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③ 19세기 말엽으로부터 20세기에 걸쳐서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기업의 제조공정이 현저하게 복잡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 원가계산은 제품의 基本原價(prime cost)만을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였다. 그러나 중동력기계의 이용도가 점차로 증대되고 대량생산이 전전됨에 따라 간접비가 증대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간접비의 정확한 배부계산이 불가결하게 되어 원가계산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187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산업은 아직 농업이 지배적이었고 기업은 소규모라서

(3) A.C. Littleton, *op. cit.*, pp.320-321.

(4) Eldon S. Hendriksen, *op. cit.*, p.41.

판매는 주로 지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부터 대량생산이 전개됨에 따라 대다수의 주요 산업에서 전국의 시장을 상대로 제품을 생산·공급하게 되면서 원가계산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원가계산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原價管理問題에 우선 집중되었다. 즉, 기계에 의한 생산체계가 확대되어 나가면서 제조공정은 불가피하게 복잡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수인의 작업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많은 회사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회사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 이들 산재해 있는 從屬會社들을 중앙관리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철, 석탄 및 섬유 등 여러 산업에 중동력기계가 도입되어 固定資產의 비중이 커지고 또 제품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間接費計算과 間接費配賦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종래의 基本原價計算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營業費의 原價算入 與否, 資本利子·陳腐化·減價償却費·開發費 등의 原價性 여부 및 초과시간급을 초과시간작업의 대상이 된 제품에만 부과할 것인가, 간접비는 어떤 방법으로 배부할 것인가, 또 여기에 遊休設備와 관련하여 나타난 간접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生產量의 증감이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 원가 및 원가계산의 이론이 발전되고 그의 실천적 적용수준이 향상되었다.

원가계산 발전 초기에 있어서 이같은 문제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해결하려고 집필한 저자 및 저서로는 1878년에 발간된 배터스비(T. Battersby)의 '철 및 브라스 주조업자, 기계제작업자, 기술자, 조선업자 등을 위한 완전한 복식부기 및 완전한 기본원가 및 이익계산' (*The Perfect Double Entry Bookkeeper and the Perfect Prime Cost and Profit Demonstrator (on the Departmental System), for Iron and Brass Foundries, Machinists, Engineers, Shipbuilders, Manufactures etc.*)과 1887년의 카크와 펠스(E. Carke and J.M. Fells)의 '工場會計' (*Factory Accounts, Their Practice, A Handbook of Accountants and Manufactures, 1st ed.*)를 비롯해서 노턴(G.P. Norton)의 '纖維製造業者簿記' (*Textile Manufactures Bookkeeping, 1889*) 그리고 루이스(J.S. Lewis)의 업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다같이 영국인이었으며 오늘날 원가계산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미국에 있어서의 원가계산은 前世紀末에 있어서의 메트칼프(H. Metcalfe)의 '製造業의 原價' (*The Cost of Manufactures, 1885*)를 선두로 해서 영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처치(H. Church)에 의해서 그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다. 특히, 처치는 1901년의 '製造原價와 會

計' (Manufacturing Costs and Accounts) 및 1908년의 '적절한 經費의 配分' (The Proper Distribution of Expense Burden)등의 논문을 통해서 間接費의 配見武問題에 관해서 설명하는 한편 당시까지 이루어져 왔던 배부방식을 검토하고 다시 科學的 機械時間比例法 (scientific machine hour rate method)과 더불어 補充率(supplementary rate)에 따라 조업부족분을 원가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다져진 원가계산의 기초는 1910년경까지는 아놀드(H.L. Arnold)와 니콜슨(J.L. Nicholson)에 의하여 체계화되고 실천되었다. 이같은 원가계산의 발전은 재고자산에 대한 恒久在庫法 및 製造間接費配賦 등의 개발을 통해서 제품원가를 정확히 결정하게 되어 종래의 財務會計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제도로서의 企業會計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재무회계에 종속된 원가계산은 사후계산으로서의 實際原價計算이었다. 이에 대해서 테일러(F.W. Taylor)에 의해서 제창된 科學的 管理法 (scientific management)의 이념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나타난 產業合理化運動에 호응해서 事前計算으로서의 標準原價計算에 의한 원가관리를 놓게 하였다. 당시에 원가계산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들로서는 미국의 테일러 외에도 간트(H.L. Gantt), 길브레스(F. Gilbreth), 쿠크(M.L. Cooke), 에머슨(H. Emerson) 및 프랑스의 파이욜(H. Fayol)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집필한 저서는 대부분이 1900년부터 1915년 사이에 나타났으며, 이것이 經營管理와 原價會計의 발전에 커다란 자극을 준 것은 테일러가 사망한 1915년 이후부터였다.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는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설명한 것이었다. 생산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영자와 기사들은 원가계산담당자와 협력하게 되었으며, 또 원가의 확정이라는 종래의 관념을 떠나서 原價統制(cost control)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가계산은 효율측정을 위한 관리용구로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원가계산에 관한 사고의 변천에 따라 標準原價(standard costs) 개념이 발전되었고, 생산을 위하여 마땅히 나타나야 할 진실한 원가로서의 표준원가와 손실(loss)이나 비능률을 포함하고 있는 實際原價(actual cost)를 구별하게 되었다.

표준원가를 제창한 초기의 학자로서는 화이트모어(John R. Whitemore)와 에머슨(Harrington Emerson)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08년과 1909년에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학에서 강의도 하였다. 그러나 표준원가의 주요한 전개기는 일반적으로 1916년~17년이라고 볼 수 있으며, 1920년대에 들어와서 현저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처음 30년간에 나타난 원가회계사고의 급격한 진전은 회계이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원가기록을 재무회계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工企業의 損益計算方法이 가능하게 되었다. 在庫資產評價는 原價主義에 한층 더 바탕을 두게 되었고 보다 훌륭한 收益·費用의 對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製造間接豫定費配賦率(predetermined overhead rates)과 標準原價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非能率原價(cost of inefficiency)나 遊休設備原價(idle capacity cost)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간접비문제가 중시됨에 따라서 減價償却概念이 나타나게 되었다.

直接原價計算과 더불어 원가의 經營計劃 및 統制에의 응용에 관한 실천적·이론적 연구가 나타난 것은 1930년 이후의 일이다.

3. 減價償却會計의 전개

영국에서는 일찍이 1880년대에 감가상각에 관한 근대적인 사고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영국의 회계제도의 이식과 더불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合併運動을 계기로 하여 대기업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에 있어서의 감가상각에 관한 문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리틀頓(A.C. Littleton)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감가상각비의 기원은 19세기 초에까지 소급하여 고찰할 수 있다고 한다.⁽⁵⁾ 당시에 있어서의 감가상각방법은 상각자산을 마치 재고자산과 같은 것으로 보고 기말에 재평가한 평가액을 판매한 상품과 마찬가지로 설비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 差額의 減價를 계산하는 이른바 在庫法(inventory method)에 의존하였다. 이 방법은 19세기 부기문헌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철도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이같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⁶⁾ 당시에 있어서의 일반적 경향은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 감가상각을 한다 하더라도 전술한 재고법에 의하던가 또는 이익의 다과에 따라 상각액을 가감하는 任意法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공의사업 및 철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감가상각이 일반화되었는데 초기에 있어서의 감가

(5) A. C. Littleton, *op. cit.*, p.225.

(6) Perry Mason, "Illustrations of Early Treatment of Depreciation," *Accounting Review*, Sept. 1933, pp.209-218.

A.C. Littleton, *op. cit.*, 1933.

G.O. May, "Changes in the Accounting Treatment of Capital Items Clearing the Fifty Years," *A Report of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57, p.208.

상각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영업비를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評價目的으로서 이루어 졌던 것이다. 즉,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만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할 수 있었다. ⁽⁷⁾

메이슨(P. Mason)에 의하면 감가상각에 관한 사고는 법정에도 나타났는데, 1878년의 미합중국 對 캔자스 퍼시픽철도회사(United States vs. Kansas Pacific Railway Co.) 사건에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에 있던 재판소가 1909년의 낙스빌 워터회사 사건(Knoxville Water Co. Case)에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⁸⁾

1909년의 法人所得稅法은 現金主義를 토대로 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총소득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內國歲入委員會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다른 비목과는 별도로 공시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여기서 減價控除는 ① 資產의 耐用年數, ② 原價, ③ 時價, ④ 利用目的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13년 修正憲法 제16조에 따라 통과된 1913년의 所得稅法(Revenue Act)에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한편 시가는 고려에서 제외하고 取得原價主義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1916년 이전의 稅率은 대략 1~2%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문제는 중소기업에서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17년 이후 세율이 현저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감가상각의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累進稅率은 최고 63%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감가상각비 \$1,000당 節稅效果는 1909년에는 \$10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17년에는 \$824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다. ⁽⁹⁾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감가상각에 신경을 쓰게 되고 減價償却會計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¹⁰⁾ 이와 동시에 감가상각비계산의 기본적 전제인 資本的支出과 收益性支出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1918년의 개정에서는 陳腐化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상도 인정하게 되었다.

所得稅法에 의한 감가공제는 감가상각회계를 보급시켰지만 상각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다만 ‘一貫된 方法에 따라서’ (in accordance with consistent plan) 계산할 것만을 규정하

(7) J.D. Coughlan and W.K. Strand, *Depreciation; Accounting, Taxes and Business Decisions*, The Ronald press, 1969, p.2.

(8) Perry Mason, “The Supreme Court on Public Utility Depreciation,” *Accounting Review*, Sept. 1936.

(9) O.E. Fisher, “Depreciation Practice and Plant Records,”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28, p.162.

(10) Earl A. Saliers, *Depreci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1939, p. 20.

고 있다. 그러나 財務部에서는 定額法을 채택할 것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회계실무에서 모두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과 같이 전개된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감가상각에 관한 사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債却資產(固定資產)을 非販賣商品으로 보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상각자산이 적당한 상태로 유지되는 한 감가상각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維持費만을 당해기간의 비목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이다.⁽¹¹⁾ 첫 번째의 사고는 19세기 초기에 製造企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두 번째의 사고는 19세기 후반에 鐵道業에서 수용되었던 견해였다.

첫번째 사고에 따르면 固定資產計定은 하나의 商品計定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이 계정의 借邊에 원가로서 기입하였다가 그 耐用年數가 끝나면 이를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동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였다. 이와 같은 상각방법은 19세기에 제조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방법이다. 그렇다고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取得原價에서 매년 일정액을 차감하는 상각방법에 관한 이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로서, 잉글리쉬(W. Inglish)는 1861년에 감가상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건물·기계의 계정에서 그의 5%나 10%의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공제하여 자산의 陳腐化 또는 減耗 및 磨損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¹²⁾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이 당시의 회계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선의 실천방법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두번째 사고는 20세기의 초기에 이르기까지 감가상각은 하나의 評價概念으로서 널리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때까지 비록 많은 기업에서 체계적인 감가상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가상각을 평가과정으로 이해하고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자금이나 투자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고가 농후하였던 것이다. 예로서, 코울(W.M. Cole)은 1908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보통 ‘帳簿에서 差減하는 것’ (writing-off)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최초의 장부가치가 새로운 보다 적은 가치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그리고 이어서 그는 감가상각정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대체하지 않고 자산을 사용해 버린다든가 또는 부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의 이론적 근거는 이것과 동 종류의 자산

(11) E.S. Hendriksen, *op. cit.*, p.42.

(12) W. Inglish, *Bookkeeping*, 1861, Littleton, *op. cit.*, p.226.

(13) William Morse Cole, *Accounts, Their 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1908), p.79.

을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수선이나 대체를 빈번히 하여 그 자산을 초기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유지시켜 장래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特別準備金을 설정하지 않는 정책이다. 셋째로는 일정시점까지 감가상각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중간시점에서 대체하는 데 충당할 수 있는 特別資金을 축적하는 정책이다.⁽¹⁴⁾"

감가상각을 資產의 評價概念으로 이해하였던 견해는 1917년에 발행된 케스터(R.B. Kester)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현시점에 있어서의 자산의 평가가치와 그 이전의 가치와의 차이는 마모 또는 그 밖의 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손실로서 이를 감가상각비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收益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인식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몇 가지의 감가상각방법이 나와, 이를 公益事業(public utility)에 적용하게 되었다. 살리어스(E.A. Saliers)는 1915년 그의 저서에서 定額法·定率法·減債基金法·年金法·生產單位原價法 등 다섯 가지의 감가상각방법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1930년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제조기업과 상기업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예컨대, 햅필드(H.R. Hatfield)는 1927년에 발행한 그의 저서에서 "여러 회사는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아한 행위로 생각하여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充當金이 호경기보다는 불경기 때에 적게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된 것만도 그의 첫번째 저서가 나온 1908년경에 비하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08년경에는 경영상태가 저조할 때, 미국의 회사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기록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늘날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순손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었다.⁽¹⁶⁾

(14) *Ibid.* p.79.

(15) Earl A. Saliers, *Principles of Depreciation*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15), pp.134-73.

(16) H.R. Hatfield, *Accounting, Its Principles and Problems* (New York; D. Appleton & Co., 1927), p.140.

IV. 鐵道產業의 성장과 會計의 발달

1. 철도산업의 발전

최초의 원시적인 증기기관은 영국의 뉴커멘(Thomas Newcomen)에 의하여 1712년에 발명되었고 1769년에는 이보다 훨씬 개량된 증기기관이 왓트(James Watt)에 의하여 생산되었다. 그 후 증기기관차의 개선을 계속 해오다가 1825년에는 기관차가 스토�顿-달링턴철도(Stokton and Darlington Railway)를 시속 12마일로 달리게 되었고 1830년에는 세계 최초의 철도라고 불리워지는 총연장 31마일의 리버풀-맨체스터철도(Liverpool and Manchester Railway)가 개통되었다.

미국의 철도건설은 영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1827년에는 총연장 130마일의 볼티모어-오하이오철도(Baltimore and Ohio Railway) 건설이 승인되고, 이어 건설된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햄버그철도(Charleston and Hamburg Railway)는 1831년에 정기 여객을 수송하기 시작했다. 이를 철도를 선두로 해서 1830년 이후 철도건설은 급진전되어 1840년에 철도연장거리는 3,328마일, 1850년에는 약 8,900마일,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1860년에는 30,626마일로 연장되었다.

철도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철도회사가 속속 설립되었다. 1826년에 뉴욕 센트럴철도(New York Central Railroad), 1846년의 펜실베이니아철도(Pennsylvania Railway) — 이들 두 회사는 1968년에 합병하여 펜센트럴회사(Penn Central Company)로 되었다. — 를 비롯해서 1859년의 애치슨·토피카·산타페철도(Atchison, Topeka and Santa Fe Railway), 1861년에는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의 센트럴 퍼시픽철도(The Central Pacific Railway), 1862년에는 유니언 퍼시픽철도(Union Pacific Railway) 등이 설립되었다.

철도건설은 1860년 이후에 급진전되어 1869년 5월 10일에는 유니언 퍼시픽(Union Pacific)과 센트럴 퍼시픽(Central Pacific)이 최초로 미대륙의 동서를 잇는 극적인 기념식을 유타(Utah)주에 프로몬토리(Promontory)에서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1870년부터 금세기초에 걸친 이른바 鐵道時代(Railroad age)를 맞이하게 되었다. 1860년부터 1890년까지 30년 동안에 135,000마일의 철도가 건설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는 철도 총연장거리는 252,105마일로서 이것은 당시 유럽 대륙의 총연장거리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2. 철도산업이 회계에 미친 영향

이와 같이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 나타난 철도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발전은 회계사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財務 및 會計分野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철도산업은 거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이것은 19세기 중엽의 제조기업에 비하면 長期的인 設備投資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은 요인이 資本과 利益의 구별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철도산업의 초기에 있어서 미국의 철도회사 설립자들은 자본으로부터 막대한 配當을 지급받았다. 예를 들면, 종래에는 전혀 배당을 하지 못하던 에리철도(Erie Railroad)와 일리노이 센트럴철도(Illinois Central Railroad) 등이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8%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株式配當을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철도회사의 주가는 오랫 동안 증권시장에서 상승일로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당이 철도산업의 진정한 이익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으로부터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즉, 이 거대한 배당금이 철도산업의 장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와 같은 배당금지급이 계속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철도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되자 자본과 이익을 구별하여 자본은 투자액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배당금은 이익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고가 나타나게 되었다.

철도시대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나타난 회계사고의 하나는 지출이 나타났을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이것을 收益的 支出과 資本的 支出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이다. 1849년에 영국의 特別監查委員會에 제출된 監查證明書에는 지출이 있었을 경우에 이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두 계정에 나누어 기록할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¹⁷⁾ 당시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詐取事件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데에 원인이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1868년의 鐵道法規則(Regulation of Railway Act)에서 처음으로 수익적 지출로서 취급할 수 있는 항목과 자본적 지출로서 취급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었으나, 統一性이 결여되어

(17) Harold Pollins, "Aspects of Railway Accounting before 1868," in Littleton and Yamey, *op. cit.*, p.332.

있었다.

미국에서는 철도계정의 기입에 관한 최초의 규칙이 1876년에 매사추세츠鐵道委員會(Railway Commissioners of Massachusetts)에 의해서 발표되었다.⁽¹⁸⁾ 統一的 鐵道計定制의 개략은 州의 特別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州際商業委員會(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제출한 최초의 계정분류는 1894년에 나타났다. 그러나 1906년 헵번법(Hepburn Act) 이후에서야 처음으로 州際商業委員會는 그의 관할하에 들어온 철도업의 통일계정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營業費分類表」(Classification of Operating Expenses)가 1907년에 나왔으며, 완전한「蒸氣鐵道會計分類表」(Accounting Classifications for Steam Railroads)는 1914년에 와서야 발효되었다.

철도업을 중심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減價償却의 기록과 資本維持를 위한 諸方法에 관한 논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영국과 미국의 철도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자본유지의 방법은, 代替法(replacement method) 또는 更新法(renewal method)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모든 代替支出은 대체 또는 갱신시에 비용으로 계상된다. 즉,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도 당초의 투하자본이 규칙적인 修繕·更新의支出에 의해서 영구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에 있어서 철도업회계는 資本과 利益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나아가 감가상각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V. 租稅制度와 會計의 발달

1. 세법의 전개과정

稅法이 회계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회계에 의한 회사통제의 한 형태이며 회계는 다시 세법을 통해서 회사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도

(18) Percival F. Brundage, "Influence of Government Regulation Development of Today's Accounting Practices," *The Journal of Accountancy* (Nov. 1950), p.384.

구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17세기 이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향을 취하였으나⁽¹⁹⁾ 현대적인所得稅는 나폴레옹(Napoleon) 전쟁시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즉, 프랑스에서는 1793년에, 전시재정조치로서 綜合所得稅를 채택하였고 영국에서도 1799년의 유사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영국의 査定節次는 후에 미국의 稅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정식의 累進形態는 아니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 免稅를 인정하고 生命保險料의 지출 및 소득을 내는 건조비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같은 조세는 1816년에 폐지되고 현행의 所得課稅制度가 영국에서는 1842년, 오스트리아에서는 1849년, 독일에서는 1890년에 각각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미국에서 聯邦所得稅가 부과되기 전인 1780년부터 1860년까지의 政府歲入의 주요원천은 關稅에 의존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연방소득세법의 창설이 제안되었던 것은 19세기초였다. 당시의 재무장관 댈러스(Dallas)는 1815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에 세입조달의 수단으로서 相續稅(tax on inheritances), 소맥분세(tax on wheat flour), 銀行配當稅(tax on bank dividend)과 더불어所得稅(income tax)의 창설을 제안하였다.⁽²⁰⁾ 그러나 댈러스의 제안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반세기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즉, 1861년에 발발한 남북전쟁으로 인해 팽창된 歲出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장관 체이스(Chase)는 소득세를 포함한 直接稅·間接稅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여 이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不備한 점이 많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음해인 1862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800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3%의 累進稅率을 적용하고 \$5,000 이상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소득세법은 課稅標準이 되는 소득에 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總所得 또는 總收入(gross income or gross receipts)에 과세하였다.⁽²¹⁾ 1863년에 와서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즉, 1863년에는 집세의 損金算入이 인정되었고 이어 1년 이내에 구입한 부동산의 처분손, 이자, 수선비, 기타 특정의 사업경비가 損金으로서 인정되었다. 또한 1867년에는 화재손실, 선박의 난파손실, 무역에 의한 손실, 貸損損失이 총소득으로부터 차감항목으로 인정되었다.⁽²²⁾

(19) Carl Sumner Shoup, *Ricardo on Tax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0), p.220.

(20) Edwin R.A. Seligman, *The Income Tax*, Macmillan Co., 1911, p.430.

(21) Roswell Magil, *Taxable Income*, The Ronald Press Co., 1936, p.294.

이와 같이 純所得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그것은 오늘날에 보는 바와 같은 순소득개념을 기초로 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減價償却費의 損金算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부인되었다.⁽²³⁾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1909년에 성립된 會社消費稅法(Corporate Excise Tax Law)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즉, 미국에서 회사소득에 대한 과세는 회사소비세법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개인소득의 과세는 1913년 헌법 제16조 修正案의 통과로 비로소 실현되었다.

1913년의 歲入法은 또한 現金收支基準에 의한 과세순소득의 계산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반대에 부닥쳐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發生主義基準을 따른다고 하는 재무규칙의 해석을 얻기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규정이 생겼다. 즉, “지불되었다”든가 또는 “실제로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실제로 지불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또 지불할 부채를 짊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납세자의 장부에서 확인되면 이것을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1916년의 同法은 올바른 방향으로 일보 진전되었다. 이에 의하면 이같은 방법이 소득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그 회사가 장부기입하는 기준으로 納稅申告書를 작성할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1917년에 超過利潤稅法(Excess Profit Tax Law)의 출현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절차도 완벽하게는 실행될 수가 없었다.

1918년의 동법은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정된 회계절차를 허용한 최초의 법이었다. 동법 212항의 (b)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순소득은 납세자의 기장에 의하여 正規로 적용된 회계방법에 따라 당해 납세자의 會計期間(경우에 따라서는 財政年度 또는 歷年)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단, 그와 같은 회계방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통용된 방법이 명료하게 소득을 나타내주지 못하면, 소득산정은 커미셔너(Commissiner)의 의견에 따라 명료하게 소득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같은 稅務方針은 1918년 이후에 각 법령에 반영되었으나 제 법령에 명시된 방침의 예외로 인해 제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課稅所得과 財務會計上의 利益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1918년에 동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의 의도는 稅務會計와 一般財務會計를 가능한 한 조

(22) *Ibid.*; p.295.

(23) Henry R. Hatfield, *op. cit.*, D. Appleton and Company, 1927, p.135.

(24) George O. May, "Accounting and the Accountant in the Administration of Income Taxation," *Columbia Law Review*, vol. XLVII(April, 1947), p.379.

Eldon S. Hendriksen, *op. cit.*, p.47.

정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동법에 의하면 “승인된 기준이 되는 회계방법은 보통 명확하게 소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또한 이와 같은 원리를 반영하여 당시에 허용되었던 회계방법의 주요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1918년 이후에 있어서도 세무회계와 재무회계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의 대부분은 법규가 기초하고 있는 또는 동법 중의 허점을 봉쇄하기 위해서 소득의 일반적 개념을 수정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차이는 정치적 압력에 의한 사회개혁의 수행 혹은 특정산업을 구제하는 데 세법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공평한 과세를 하려는 데서 나타난 것이었다. (25)

2. 세법과 회계

1913년 당시의 *會計技法*은 초기의 세법에 비하면 월등히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세법규의 회계개념에 대한 의존관계가 급속히 인식되었다. 최초의 *內國歲入法*은 회계기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휘하여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가 있었다.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회계의 주요한 목적은 *所得稅申告書*(income tax return)를 작성하는 데 있었으며, 또 이와 같은 목적이 없는 한, 기업내에서 회계문제는 거의 도외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규칙이 회계의 일반적 절차를 설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와 관련된 회계의 제 절차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會計理論*의 형성에 이바지하게 된 점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조세목적을 위한 소득의 규정과 재무회계목적을 위한 이익의 측정간에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각 기본적인 개념과 목적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헨드릭센(Eldon S. Hendriksen)은 세입법과 재무부 규제 등 세법이 회계학에 미친 영향은 간접적인 것이었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6)

첫째, 1909년의 *消費稅法*(Excise Act)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적정한 充當金을 공제한 후 결정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의 각 조항은 1913년의 *歲入法*(Revenue Act)과 그 후의 모든 법률제정에도 영향을 미쳐 감가상각의 본질과 그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고취시켰다.

(25) Eldon S. Hendriksen, *op. cit.*, p.48.

(26) *Ibid*, pp.48-49.

둘째, 1918년의 세법에서는 소득산정상 필요하다면 在庫調查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在庫資產評價의 方法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초기의 규칙에서는 在庫資產評價에 低價主義를 인정함으로써, 이 절차가 일반적으로 채택되었고, 저가주의의 적부에 관해서 논의하게 되었다.

넷째, 세법을 둘러싼 법정사건이 회계개념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예로서, 아이스너(Eisner) 對 매컴버(Macomeber) 사건에서 미국 최고재판소가 주식배당은 주주의 소득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판결은 "이익은 부의 증가가 실현되었을 때만 존재한다."(27)는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년에 와서는 세법의 제 규정이 회계와 회계원칙에 逆作用을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있다. 會計原則이나 會計實務가 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경향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세목적에만 합치된다고 하면 어떤 감가상각방법이라 하더라도, 회계이론상의 타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적용한다. 예컨대, 납세신고서를 작성할 때 後入先出法을 적용하였다고 하면, 재무보고목적으로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 기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항목, 예를 들면 研究開發費는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비용으로 계상한다.

③ 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관계로 모든 비용을 전부 계상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세법이 회계이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이었으며 직접적인 것이 되지는 못하였다.(28)

VII. 株式會社의 발달과 會計

1. 주식회사의 발달

19세기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회사형태를 갖춘 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800년까지 3,385개의 영리기업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18세기말의 10년 동안에 설립된 것들이었다. 이들 기업은 직접적으로 공익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서 조직되어 도로·교량·운하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은행과 보험회사의 영업행위를 하고

(27) Henry Rand Hatfield, *op. cit.*, p.251.

(28) Eldon S. Hendriksen, *op. cit.*, p.49.

소방대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주식회사조직을 띠고 나타난 중요한 제조기업은 1813년 매사추세츠에서의 예가 최초의 것이었다. 1860년까지 섬유관계의 기업을 제외하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던 제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860년 이전에 株式會社組織을 이용한 업종은 철도건설업이었다. 남북전쟁 후 주식회사 형태는 미국의 철도 산업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1930년까지 철도산업간에 합병과 경쟁으로 인하여 일급노선의 86.6%를 14개의 대형 철도회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의 형태는 광산업·채석업·제조업에서 급격히 발전하였다. 鐵礦業과 採石業의 기업은 1920년에 86%가, 그리고 1919년까지는 94%가 주식회사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같은 조직의 변화는 製造業에서는 1899년에 67%에 달하고 1930년에 이르기까지 90% 이상이 되었다.⁽²⁹⁾

미국에서 주식회사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기업은 州議會가 직접 교섭하여 그의 인가를 받았다. 최초의 회사법은 제조기업에 관한 것으로서 1811년 뉴욕주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적법하기만 하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회사조직을 허가한다고 하는 최초의 새로운 법률은 1837년 코네티컷주에서 제정되었다. 이로부터 1900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그 밖의 대부분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 주식회사제도의 발전이 회계사고에 미친 영향

株式會社制度의 발달이 회계사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특기할 만한 것은, 繼續企業 개념의 출현, 企業實體 理論의 대두, 聯結財務諸表와, 合併問題, 近代的 財務報告書에 관한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① 繼續企業의 개념: 이것은 주식회사형태가 나타나기 이전인 組合組織이나 合資會社(joint-stock company)조직의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투자자들은 영구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도 공업의 기계화·공장제도·대량생산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자본수요를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나타난 주식회사 제도의 발달은 회사소유권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별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업을 계속적인 존재로서 이해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29) Adolf A. Berle, Jr. and Gardiner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33), p.10-14.

고 볼 수 있다.

② 企業實體理論: 전술한 바와 같이 1900년대 초기에 있어서의 회계는 資本主義理論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본주이론은 스프라그(C.E. Sprague), 햅필드(H.R. Hatfield), 케스터(R.B. Kester) 등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자본주이론에서의 기업활동은 기업소유자의 입장에서 인식된다. 말하자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자본주의 것이며, 이익은 資本主持分의 증가이고 회계정보는 자본주에 대한 정보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이론은 소규모 기업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의 주식회사에서는 기업실체이론이 보다 적절한 이론이 되었다. 기업실체이론에서는 '자본'과는 별개의 독립적 존재로서의 기업실체를 인정하고, 기업 자체가 자산과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익은 주주지분의 증가이고, 주주지분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請求權으로서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 기업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기업실체이론을 제창한 초기의 학자로서는 페이톤(W.A. Paton)이 있다.⁽³⁰⁾ 기업실체이론은 그 후에 더욱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기업체이론(*enterprise theory*)과 잔여지분이론(*residual equity theory*)으로까지 발전하였다.⁽³¹⁾

③ 聯結財務諸表와 合併: 1890~1904년 사이에 나타난 합병의 결과로 大規模의 株式會社가 나타나게 되었다. 1901년에 설립된 미국철강회사(U.S. Steel Corporation)는 1902년에 주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연차보고서에 포함시킨 선구자적 역할을 한 회사였다.⁽³²⁾ 연결재무제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업실체의 개념, 재무제표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營業權(goodwill)의 문제, 실현주의의 확대, 그리고 주주지분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논의 등 많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④ 근대적 財務報告書: 1902년 미국철강회사의 財務報告는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던 부

(30) William Andrew Paton, *Accounting Theor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22), Preface pp.iii, iv.

(31) Waino W. Soujanen, "Accounting Theory and the Large Corporation,"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54), pp. 391-398, 및 George J. Staubus, *A Theory of Accounting to Investor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Chapter 2.

(32) Bernard B. Greidinger, *Preparation and Cert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50), P. 4, 또는 Percival F. Brundage, "Milestones on the Path of Accounting," *Harvard Business Review* (July 1951), p.72.

적절한 재무보고서를 작성·제출하던 풍조에 비하면,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로서 The Westing House Electric and Manufacturing Company의 경우는 연차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1897년부터 1905년까지는 주주들에게 재무제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³³⁾ 그러나 기업이 확대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주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일반대중의 비판과 아울러 기업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공시(disclosure)에 관한 선도적 제창자로서는 리플리(William Z. Ripley)를 들 수 있다.⁽³⁴⁾

한편, 혹시(J.M.B. Hoxsey)는 會計實務와 관련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이익이나 지분을 過小表示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총수익을 명시하지 않는 점, 이익의 중요한 항목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 점, 연결재무제표작성과 관련된 기본방침(예: 의결권주식의 소유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점, 이익잉여금 항목을 자세히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³⁵⁾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1920년대의 호황시에는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지만, 1930년대의 불황기에 들어와서는 증권관계법의 제정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³⁶⁾

⑤ 기타의 영향: 주식회사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 배당금은 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자본에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 요청의 결과로써, 실질적인 減價償却會計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장기자산의 用役潛在力(service potentials)이 소멸(expiration)되었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자본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익도 적정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
- 회계학의 중심과제가 原價主義에 의한 資產評價와 損益計算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 회사의 財務報告書는 채권자보다는 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기간이익의 정보를 강조하게 되었다.
- 주식회사와 관련된 특수한 會計關係, 예를 들면 자기주식(treasury stock), 주식배당

(33) David F. Hawkins, "The Development of Modern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Among American Manufacturing Corporations," *Business History Review* (Autumn 1963), p.137.

(34) William Z. Ripley, "Stop, Look, Listen!," *Atlantic Monthly* (September 1926), p. 380 및 Hawkins, *op. cit.*, p.148.

(35) J.M. B. Hoxsey, "Accounting For Investors," *The Journal of Accountancy* (October 1930), pp.251-284.

(36) Hawkins, *op. cit.*, p.149.

(stock dividends), 株式買受權制度(stock option plan), 지분풀링법(pooling of interest)에 의한 합병 등의 회계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VII. 證券市場의 발전과 會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주식이 거래된 것은 1531년에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에서 였다.⁽³⁷⁾ 그러나 이것이 영국에서 나타난 것은 1700년대의 일이다. 즉. 株式을 賣買하려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업을 매도해 주는 브로커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같은 일이 런던에서는 브로커들이 많이 모여드는 커피하우스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1773년에 런던의 브로커들이 주식매매를 위한 장소를 형성한 것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金融資產(financial assets)을 거래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實務를 표준화하고 규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非公式的 組織을 결성한 것은 1791년의 필라델피아에서 였다. 그리고 뉴욕거래소는 독립전쟁시에 政府債賣買商人이 1792년에 뉴욕의 월(Wall)가 부근의 일정 장소에서 매일 일정시간에 모여 거래한 것을 그의 기원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1792년 3월에 코레스 호텔(Corre's Hotel)에서 모임을 갖고 協定手數料 이하를 받고 거래하지 않을 것과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옹호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 후 커피하우스를 이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817년에는 定款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조직을 결성하였다. 오늘날의 뉴욕證券去來所라는 명칭은 1863년에 채택된 것이다.

1817년에 공식기구로 설립된 증권거래소는 1812년의 전쟁기간에 정부지출의 증대에 따른 國債의 증가로 말미암아 브로커들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도록 압력을 받아 설립되었다.⁽³⁸⁾ 그러나 여기서는 주식매매의 소개가 이루어질 뿐이었다. 어떤 시기에는 증권업자가 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밀접한 연락관계를 가지고 일종의 金融仲介業의 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시기도 있었다. 證券發行事務가 受託된 경우에도, 증권을 매출할 때에도 인수는 하지 않았다. 증권을 일반으로부터 널리 공모하는 형식으로 매출하게 된 것은, 1861년부터 시작된 남북전쟁당시에 제이 쿠크(Jay Cook)가 聯邦政府債와 州債를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서 일반에게 매도하는 데 성공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제이 쿠크도 1873년의 불황을 당하여 總額(買收)引受方式의 公募發行에 실패함으로써 퇴조하였다.

(37) *The World Book Encyclopedia*, Field Enterprises Educational Corporation (Chicago: Ill., 1970), vol. 17, p.706.

(38) *The Stock Market Handbook* (Dow Jones Irwin, Inc., Homewood, Illinois, 1970), p.5.

19세기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증권발행시의 인수금융기관으로서의 投資銀行 (investment bank)이 속속 설립되었고, 1893년의 공황 후에는 특히 철도회사를 중심으로 한 증권발행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그의 발행방법도 發行事務代行的인 방식 (on an agency basis)으로부터 一括引受方式 (underwriting)으로 발전하였다. 이 당시에는 급속한 산업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저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발행된 증권이 전부 소화되기까지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에 관한 극단의 예를 들면, 美國鐵鋼會社가 1901년에 발행한 普通株종에서 1909년 말까지 소화된 주식이 34%에 불과하였고 1914년까지도 그의 57%밖에 소화되지 않았다.

이같은 관계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그 뒤에 나타난 저축의 증대이다. 즉, 증권은 제1차 대전을 고비로 일반에게 크게 보급되게 되었다. 또한 제1차 대전후에는 자본에 대한 기업측의 需要도 현저하게 증대되어 증권시장은 賣買仲介뿐만 아니라 發行市場 또는 發行時의 引受市場까지 포함하여 현저한 발전을 하였고 또 정비되었다. 그 결과 1920년대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와는 반대로 산업의 급속한 확장에 따라 산업자금의 공급이 활발하게 되었다. 증권발행시에 있어서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위험은 훨씬 줄어들게 되었고 투자은행에 의존함이 없이 자력으로 발행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뉴욕證券去來所의 前身은 회사의 유가증권이나 정부채권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792년에 설립되었으나, 1866년에 이르기까지 上場會社로부터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다.⁽³⁹⁾ 그러나 1900년에 동거래소에 상장을 출원하는 회사가 모두 그 財務狀態와 營業成績에 대한 年次報告書를 공표할 것에 동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성취되었다. 이와 같은 합의는 그 후 1929년에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연차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에게 재무보고서를 공표제출할 것을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었다. 1926년부터 1933년까지는 주주를 위해서 재무정보의 적절한 공개를 하는 문제에 동거래소의 역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뉴욕증권거래소는 재무제표의 공표를 통하여 재무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관련하여 會計思考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VIII. 結 言

産業革命과 더불어 주로 英美를 중심으로 나타난 일련의 경제적 사건은 會計學을 새로

(39) B.B. Greidinger, *op. cit.*, p.6.

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다. 종래의 手工業方式의 공업은 기계에 의한 工場制方式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았으며, 생산과정에서 기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수공업시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個別製品에 대한 원가계산 대신 대량의 同種製品에 대한 원가계산의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의 분석과 記錄技巧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原價會計라는 특수한 분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공장제 생산방식의 발생 초기에는 사업규모도 비교적 小規模였고 지역적으로도 孤立되었으므로 기업간의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조기업의 거대화, 복잡화 그리고 그들간의 競爭의 激化에 따라 경영 제문제에 대한 體系的인 接近을 강조하는 “과학적 경영 개념(scientific management concept)”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원가회계도 過去資料는 물론 現在 경영상태의 效率性을 측정하고 未來에 대한 計劃을合理的으로 수립하기 위한 분석적 기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다 세련되게 발전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세기에 들어와, 대량의 資料를 一時에 처리가능하고 제반 의사결정대안들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가능한 컴퓨터의 등장에 따라 加速化되었다.

이와 아울러 19세기에 들어와 유럽과 미국에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鐵道產業은 會計思考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철도산업은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철도산업의 발전은 자본과 이익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감가상각의 기록과 자본유지를 위한 제방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나타나 감가상각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혁명에 따라 가속화된 경영활동의 확대는 공장의 건설과 기계구입에 대한 必要資金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大量資本에 대한 需要是近代의 기업조직형태인 株式會社의 발전을 가져왔다. 한편, 산업혁명의 여파는 순식간에 미국으로 전해져서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 단기간내에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량자본의 축적은 제조, 수송, 광업, 전력, 통신 등의 산업부문에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미국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企業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그 이유는 대개 소유권이 즉시 양도가능한 주식에 의해 명시되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주식회사의 기업에서 대부분의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신 理事會가 전반적인 경영정책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소유자 집단이 기업의 실질적 경영에서 제외됨에 따라 회계의 새로운 면에 대한 요청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보로서 이것은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고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재무제표는 필요하였다.

租稅制度 역시 회계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課稅所得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소득세와 회계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1913년에 연방조세법인 내국세입법(Revenue Act of 1913)이 제정됨에 따라 會計行爲에 엄청난 자극을 주었다. 주식회사, 조합기업, 개인기업 등 모든 경영조직체들은 정확한 납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에 따라 회계의 입장에서도 期間利益과 課稅所得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利益 또는 所得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證券市場의 발전은 기업의 財務狀態와 營業成果를 나타내는 財務諸表의 공표를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것은 회계방법의 統一性과 그의 基準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계기가 되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제반 경제적·사회적 여전이 조성되면서 회계를 組織的이고 體系的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가 서서히 마련되게 되었다.

參 考 文 獻

書 籍

- 李正浩, 「現代會計理論」第三訂版, 經文社, 1985년.
- Adolf A. Berle, Jr. and Gardiner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33).
- M. Chatfield,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 revised edition, 1977), 李正浩譯, 「會計思想史」, 經文社, 1985년.
- William Morse Cole, *Accounts, Their 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1908).
- J.D. Coughlan and W.K. Strand, *Depreciation; Accounting, Taxes and Business Decisions*,

-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69).
- Bernard B. Greidinger, *Preparation and Cert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50).
- H.R. Hatfield, *Accounting, Its Principles and Problems* (New York; D. Appleton & Co., 1927).
- Robert L. Heilbroner,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America* (Harcourt Brace Joranorich, Inc., 1977)
-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3rd edition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 1977).
- W. Inglish, *Bookkeeping*, 1861.
- A.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American Institute Publishing Co., Inc., 1933).
- A.C. Littleton and B.S. Yamey (ed.), *Studies in the History of Accounting* (Richard D. Irwin Inc., 1956).
- Roswell Magil, *Taxable Income*,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36).
- William Andrew Paton, *Accounting Theor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22).
- Earl A. Saliers, *Principles of Depreciation*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15).
- Earl A. Saliers, *Depreci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1939).
- R.F. Salmonson, *Basic Financial Accounting Theory* (Belmont Calif.; Wadsworth Publishing Co., Inc., 1969).
- Edwin R.A. Seligman, *The Income Tax*, (New York; The Macmillan Co., 1911.
- Carl Sumner Shoup, *Ricardo on Tax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0).
- George J. Staubus, *A Theory of Accounting to Investor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 The Stock Market Handbook* (Dow Jones Irwin, Inc., Homewood, Illinois, 1970).
- The World Book Encyclopedia*, Field Enterprises Educational Corporation (Chicago; Ill., 1970), vol. 17.

論文

Percival F. Brundage, "Influence of Government Regulation Development of Today's

- Accounting Practices," *Journal of Accountancy* (Nov. 1950).
- Percival F. Brundage, "Milestones on the Path of Accounting," *Harvard Business Review* (July 1951).
- O.E. Fisher, "Depreciation Practice and Plant Records"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280).
- David F. Hawkins, "The Development of Modern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Among American Manufacturing Corporations," *Business History Review* (Autumn 1963).
- J.M.B. Hoxsey, "Accounting for Investors," *Journal of Accountancy* (October 1930).
- Perry Mason, "Illustrations of Early Treatment of Depreciation," *Accounting Review* (Sept. 1933).
- Perry Mason, "The Supreme Court on Public Utility Depreciation," *Accounting Review*, (Sept. 1936).
- G.O. May, "Changes in the Accounting Treatment of Capital Items Clearing the Fifty Years," *A Report of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57.
- George O. May, "Accounting and the Accountant in the Administration of Income Taxation," *Columbia Law Review*, vol. XLVII (April, 1947).
- Maurice E. Ploube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ccounting" in *Modern Accounting Theory*, edited by Morton Backe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 William Z. Ripley, "Stop, Look, Listen!," *Atlantic Monthly* (September 1926).
- Waino W. Soujanen, "Accounting Theory and the Large Corporation," *Accounting Review* (July 1954).